

2005년도 식품위생정책 방향

최 성 락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1. 식품위생 환경의 변화

사람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의·식·주의 3대 요소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음식이다. 이러한 음식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제조·가공·유통·조리·소비는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약사용의 증가·중금속 오염 및 각종 공해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산업화·공업화 과정에서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등 신규 유해물질이 출현하면서 식품의 안전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찌쌀, 가짜 참기름, 숯가루 냉면, 불량만두 파동, 불량 색소,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급증 등 식품위생관련 사건이 사회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식품(GMO)등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식중독 발생도 과거에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겨

울철에도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환경은 이러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체 식품업계의 85%가 종업원 5인미만인 영세업체로 식품산업의 구조가 매우 열악하여 안전한 식품의 공급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기능도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중복 규제등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증대로 수입이 급증하고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가 조절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2. 식품정책방향

가.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광우병 파동, 조류독감 등의 사건은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 가공, 수입,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주었으나 현행 우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에 따라 각각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중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종합적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식품위해 사고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및 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위해우려 식품의 회수를 의무화 하며, 식품피해 구제 제도 도입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식품안전정책 수립 및 조정, 식품의 위해평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립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1) 하위법령 정비

식품위생법 개정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후진적인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관리수준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선의의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근절이라는 입법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식품업계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되었으며, 법률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 위해식품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되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해당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평가하도록 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한다. 수입식품 중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식약청장이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및 방법, 청문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한다. 식품제조과정의 위생관리는 영업자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자율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외부 식품전문가로 하여금 위생관리상태를 점검받도록 하는 시민식품감사인제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제도를 의무화한다.

앞으로는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에게 당해 식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되,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회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를 하위법령에서 정비할 계획이다.

다섯째,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및 병든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매출액의 2배~5배를 벌금액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동 규정이 적용될 사용 금지 원료·성분, 병육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2) 제도개선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강화방안과 더불어 식품 안전성과 무관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풀어나가는 등 식품산업육성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소분업은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만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제조장·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통·판매방식의 개발에 따라 소분업의 대상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즉석판매·제도가공업의 대상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품목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현

실에 맞게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생교육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교육시간, 교육주기 등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추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지원·육성하고자 한다.

최근에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교육에 있어서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리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의약품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관련 일선기관, 소비자단체, 업계 등으로부터 문제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제도개선 T/F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및 제형 확대여부,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영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위탁 제조범위,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관련 제도 활성화 문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여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범위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 식품산업 진흥

라. 식품산업 진흥

정부에서는 식품 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식품공전은 안전성과 무관한 품질규격은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대신 표시로 관리하며, 병원성 미생물, 중금속등 위생규격은 강화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의 고수입, 성장유망제품의 중점 육성을 통해 전략분야를 집중지원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지속성장 및 해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반확대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산업 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중 식품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 및 산업기반 구축등의 과제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이 영업자에 대한 시설개보수자금 융자사업에 치중되는 등 지원사업내용이 다양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기금의 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원사업도 단순 융자사업을 지양하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준비업체 지원, 식품산업 전산화 사업, 주민 영양개선사업 등 체계적 지원사업에 집중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주관 연구사업에 대한 조정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모범 사업수행 사례를 확산하고

기관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시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식품산업진흥”을 추가하여,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산업진흥에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음식문화 개선사업

정부에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을 범국민 참여운동으로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건강한 식생활은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 주고 웰빙(Well-being)으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미덕으로 여겨온 과도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식생활 개선운동을 시민문화운동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학계·언론계·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별 모범업소의 자율실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 Slow-food 운동으로 패스트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아이들에게 영양 불균형과 성인병 조기 발병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영양표시제도를 활용한 올바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